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Korea | Tax | 5 June 2025

Korean Tax Newsletter

2025 년 5 월

CONTENTS

세법개정

■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세무동향

■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예규판례

○ **법원**

■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 **행정안전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

○ **국세청**

■ 화물 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 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 규정 적용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세법개정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지난 4.15.부터 입법예고 되었던「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5.27.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보(Link)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 년부터 2029 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추가하는 한편, 2025 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4 년도와 동일하게 시가 표준액이 3 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 억원을 초과하고 6 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 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 분의 45'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무동향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19. 입법예고하였으며(2025.5.19. ~2025.6.30.),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5.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업종 내 기업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검토
- 업종 내 상위기업 군의 분포에 비추어 현행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기준 상한의 과대/과소 설정여부 점검

○ 업종별 매출기준 조정의 타당성 검토
- 인플레이션의 정도와 영향, 업종별 중소기업 졸업률 추이의 변화 분석
- 매출액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 업황, 업종의 특수성 여부 등을 종합적 고려

○ 업종별 매출액 구간의 합리적 조정
- 업종별 물가상승률, 경상성장률 등의 반영
- 전체 매출구간 제도의 일관성, 안정성을 고려한 조정

<중소기업 매출구간 조정안(업종별 구간)>

중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현행	개편	현행	개편
-	1,800 억원 이하(*)	-	140 억원 이하(*)
1,500 억원 이하	1,500 억원 이하	120 억원 이하	120 억원 이하
	1,200 억원 이하(*)		100 억원 이하(*)
1,000 억원 이하	1,000 억원 이하	80 억원 이하	80 억원 이하
800 억원 이하	800 억원 이하		60 억원 이하(*)
600 억원 이하	600 억원 이하	50 억원 이하	50 억원 이하
400 억원 이하	400 억원 이하		40 억원 이하(*)
		30 억원 이하	30 억원 이하
			15 억원 이하(*)
		10 억원 이하	-

(*) 신설구간

예규판례

[법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3.27. 선고 2023 두 37865 판결, 파기환송)

■ 쟁점

국세기본법 제 14 조 제 3 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와 적용 범위 및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사안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개인들이 매수한 농지들에 관하여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지분별로 분할매각한 다음 그 분양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우회 취득한 후 분할매각하여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 14 조 제 3 항 (…) 실질과세원칙은 사법(私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 3 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 두 41313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님

1)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소외인 등 개인들이 원고 등의 자금 부담으로 매수한 고양시 소재 농지들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지분별로 분할매각한 다음, 그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음

2)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조달 경위 및 매도 등 거래의 전 과정,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및 내용,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원고가 취한 분양대행수수료의 규모, 소외인 등이 취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얻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3)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소외인 등과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인 등과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체결을 주도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우회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 55 조의 2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음.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 등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전혀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법원]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4.24. 선고 2024 다 295876 판결, (일부)파기환송)

■ 쟁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되었다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 확정 방법

■ 사안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고들과 관련된 하위 중간 지주회사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하였는데, 그 후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원고들이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판결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4. 12. 2. 선고 92 누 142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충당된 조세의 환급청구권임(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 다 64435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채권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원천징수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됨(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 두 878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 다 68294 판결 및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 두 18284 판결 등 참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임(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 다 68294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 두 45246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이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에 공제·충당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원천징수 과정에서 기준이 되었던 중간 지주회사들을 납세의무자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 상위투자자인 원고들이 실질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임. 위와 같은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당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된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큼. 나아가 원고들이 위 공제·충당 처리 당시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을

유효하게 이전받았고 이로써 자신들에 대한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의 효력은 앞서 본 공제·충당 처리로 인해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것이 아님 (…)

[법원]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5.15. 선고 2023 두 47473 판결, 파기환송)

■ 쟁점

사업자가 국군복지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고,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을 상대로 해당 제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복지금 등)를 취득하는 구조에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 제 7 항의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이 사업자의 공급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안

원고는 국군복지단과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였고, 국군복지단은 군인 등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국군복지단과의 이 사건 거래가 일반매매임을 전제로 군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 중에서 국군복지단의 몫으로 귀속되는 복지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제품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판매가격에 포함된 복지금도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사안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 제 7 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 다 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 다 3164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명칭이 '위·수탁거래 계약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위·수탁거래 계약이란 국군복지단이 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제 1 조)'는 정의와 함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업체가 국군복지단에 판매를 위탁한 물품' 내지는 '위탁물품'으로 칭하는 부분(제 2 조)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 및 문언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매매와 같이 국군복지단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군복지단 운영의 군 마트를 찾는 군인 등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음

원고는 군 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즉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각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음. 특히 복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음. 이와 같이 국군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이 통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만약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국군복지단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일정 가격에 매입한 후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국군복지단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여하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직접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었을 것임. 그러나 실제로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후 정산을 거쳐 사전에 정하여진 계산방식에 따른 복지금 등만 얻는 데에 그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 8 조 및 제 13 조 등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위 제품이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제품의 손·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임 (…)

요컨대,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 제 7 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탁매매의 판단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원]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 서 10818, 2025.4.21., 재조사)

■ 쟁점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룩셈부르크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A(OOO, 우리나라의 B, C 등 OOO 회사에 OOO 등을 판매, 이하 "쟁점거래처")의 한국영업소인 외국법인으로 1996.9.20.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면서 2018 년 제 1 기부터 2022 년 제 2 기까지 쟁점거래처에게 한국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 주선 및 제품의 마케팅, 홍보, 영업지원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기타외화획득 용역으로 하여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감사원은 용인세무서장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상호주의 점검을 한 결과, 룩셈부르크가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으나 조세조약상 부가가치세 상호면세에 대한 조건 명시가 없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이나 면세 규정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과세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이에 용인세무서장은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고, 룩셈부르크도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존재한다고 보아 쟁점용역이 상호면세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의 세적 관할인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결의서 통보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룩셈부르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역의 국내거래에 대하여 룩셈부르크가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 25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 은 영세율 적용 상호면세국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룩셈부르크가 상호면세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제 6 차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의하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는 직접세에 관하여 상호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소비지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거래세로 통상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하므로 조세조약에는 규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영세율 상호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용인세무서장과 처분청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감사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상호주의 검토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과세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용인세무서장이나 처분청은 감사원 권고 외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쟁점용역이 영세율 상호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획재정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 **질의**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지배구조) 질의자는 甲법인의 주식 00.00%를 보유한 대표이사, 甲법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A 법인과 B 법인의 주식을 각각 00.00%, 00.00% 보유중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5 조 제 5 항 제 2 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2025.4.16.)

■ **질의**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 조(2025. 2. 28. 대통령령 제 35350 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행정안전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74, 2025.3.7.)

■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판단할 때,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설치업체 등)의 설치 의무 여부에 따라 감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9702 호, 시행 2024. 9. 15.) 제 47 조의 5 제 1 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에 따른 설치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과 시·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 및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의 5 에서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 주차대수가 50 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이 아니거나 규정된 시설이더라도 총주차대수가 50 개 미만인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시설'에 해당 충전시설을 설치해 취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 조의 5 제 1 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 11 조의 2 에 따른 설치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국세청] 화물 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 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사전-2024-법인-3684, 2025.4.7.)

■ 질의

화물 운송업 영위법인이 고정자산인 CA 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6 월 설립되어 국내·외 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물류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CA 컨테이너를 구매하였고 해당 컨테이너는 해상 및 항공운송 과정에서 화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CA 컨테이너는 특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특수 컨테이너로 신선식품, 의약품 등 운송에 주로 사용되며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특수 기능이 있음

회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CA 컨테이너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국세청]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206, 2025.4.22.)

■ 질의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광역자치단체인 aaa 도(이하 "도")에서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도와 bb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사무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바, 센터는 도의 주거복지정책 수행기관으로 공공성 있는 복지사업을 신청공사가 수탁운영하고,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을 수행함
- 센터는 도의 복지사업이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월 1 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이하 "만원주택")이 있으나 단순한 비용 보전의 성격임
- 도에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기타(대행수수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예산 및 지출 정산은 도의 승인을 거치고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은 전액 반납함
- 신청공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도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업임을 밝혀야 하고, 도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등 신청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지도·점검함(후략)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 따라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 4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 규정 적용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0250, 2025.4.28.)

■ 질의

특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국조법§27) 규정 적용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국조법 시행령 제 62 조에서 규정하는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외 석유자원개발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카자흐스탄 소재 광구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카자흐스탄에 광구를 보유한 외국법인(네덜란드 소재)의 지분을 인수하고, 외국법인은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와 지점세(BPT, Branch Profit Tax)를 납부하고 있음
- 해당 지점 소득은 외국법인의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만, 네덜란드 세법상 객체면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됨

회신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27 조 제 1 항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납부세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2 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서면-2024-법규기본-1329, 2025.5.22.)

■ **질의**

2019 사업연도의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당초 '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한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 1,108 백만원을 2 회에 걸쳐 '20.3.31. 554 백만원('1 차'), '20.5.4. 554 백만원('2 차') 납부하였고, 법인통합조사에 의해 증액경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36 백만원과 이에 따른 미환류소득 재계산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58 백만원을 합산한 총 295 백만원을 '23.3.30.('3 차') 납부함
- 이후 '23.8 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하여 인용결정되어 '23.10.30.일자로 195 백만원 환급처리됨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액은 미환류소득의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재계산한 것에 의한 것으로 증액경정처분과 사유를 달리함

회신

당초 법인세 신고 시 2 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신고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김경조 Partner	정호석 회계사
+82 (2) 6676-2416	+82 (2) 6099-4279	+82 (2) 6099-4734
jekwon@deloitte.com	kyungjokim@deloitte.com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